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취업규칙은 동법 제99조 제2항에 의거 변경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Q**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A**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은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Q**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A**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여부 또는 출근율의 판단에 관하여는 노동부의 종전행정해석인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인 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이루어진 '정지'나 '강제휴직(또는 직위해제)'기간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의 수령을 정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날(또는 기간)이라하면 그 날(또는 기간)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동법에 정하여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지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 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며, 법령에 저촉되는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Q**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

**A**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위층 아파트 거주자 등이 그 하자부분의 보

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를 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강제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9.17. 99다3345).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가스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이나 냉수를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 이상이고 축냉률이 40% 이상인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Q** 심야전력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A** 심야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전기온돌, 전기온수기, 축냉식 에어컨 등을 제조 판매하는 심야기기 공급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하여 기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내부 배선공사를 할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의뢰하며 고객이 직접 한전에 심야전력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기기업체나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사용 신청을 대행토록 맡기셔도 됩니다.

전기사용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전에서는 고객님께 일반 심야전력과 동일하게 한전 외선공사비를 청구하고 필요한 외선공사를 완료한 후에 심야전력을 공급하여 드립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Q** 심야전력 전기요금 제도는 무엇 인지요?

**A**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밤11시~아침9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열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 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갑)은 전기를 심야시간(밤 11시~아침9시)에만 공급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심야전력(을)은 전기를 심야시간에 주로 공급받아 축냉하여 사용하고 기타 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Q**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A** 심야전력 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나 축열식 난방기기, 축열식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 에어컨 등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심야전력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상시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나 상시전력과 동시에 전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축열식 심야전력은 온수 주거용 시설에 한해 계약전력 50KW까지만 공급 가능하고 가구당 계약전력이 50KW 초과되는 고객은 심야전력(갑) 전기사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심야전력(을)은 심야시간대에 열을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매매방지법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시행으로 3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성계와 사회각계로 크게 이분화 되어 있고, 성매매 문제는 여성계나, 여성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인권문

제이며, 개인의 도덕적 윤리와 관습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전환시키는 인식에 이르렀기에 법제화된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근절과 그 대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전과 교육 이후의 사고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우리사회의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규범은 남성에게는 성적 적극성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화 되어 있고, 성매매 문제는 여성계나, 여성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인권문

는 실정이다. 여성에 대한 평가는 성적 규범이 일차적인 평가기준이 되어 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으로 나누게 되며, 성의 이중 규범은 여성들이 성폭력, 성매매의 피해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방어해서 가해 남성의 행위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직장의 비공식적인 문화인 술자리에서 여성의 성적 서비스는 남성 결속의 매개가 되고, 집단적으로 경멸하는 성매매는 남성다움을 통해 남성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만큼 생각해 보고 살아왔는지 짚어 보아야 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모두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지사, 성문화와 성리, 윤가현) 발췌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병원  
신경과 **김대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인증:**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그 사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정동장애:** 불안, 조증, 우울증, 심한 감정의 굴곡, 무감동 등이 있습니다. **환각:** 환청, 환시, 환촉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상:** 피해망상이 발생합니다. "도둑이 내 돈 훔쳐갔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등

**행동장애:**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이나 자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031-539-916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증상

**기억력장애:** 처음에는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며 더욱 진행되면 식구, 친척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생년 월일, 주소, 과거직업, 자신의 이름까지도 모르게 됩니다.

**지남력장애:**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상실되었다가 점차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까지 감소됩니다.

**시·공간장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언어장애:** 초기에는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진행되면 원래 뜻과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기 단계에서는 말을 전혀 못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서류 준비는 곧 세금 절감입니다. 2007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매년 11월이 되면 근로소득자도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한 총결산하는 시기가 됩니다. 보통은 총급여액과 비과세급여 그리고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등 대부분의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집계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서류로서 대체

하면 되나,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직접 수집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부서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는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그리고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그중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사용한 집계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는 보통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과 국제

정 홈텍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면 되니 평소 교차교박 사용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국제정 전산화작업에 의거 국제정 홈텍스에서 수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금년 한해동안 사용한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서 재확인 하시고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니 약국 및 한의원에서 구입한 건강식품 구입영수증도 수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미용·성형수술에 사용한 비용이라하면 남성 응급확대 및 여성 질성형수술, 유방확대수술, 지방흡입수술, 보톡스수술, 치아비백치료, 교정·임플란트 시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꼭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후보자** 구체적인 공약개발

**유권자** 지지여부 결정

**유권자** 공약이행 평가

**유권자** 공약비교 따져보기

**당선자** 임기중 공약실현

**참공약 선택하기**

**Manifesto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형태 이행과 평가가 강조되는 '정책선거 실천운동'으로서 정당·후보자가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목표·우선순위·절차·기간·재원 등을 가능한 한 수치형태로 제시하여 공약을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국민에게 약속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SMART운동**

- Specific : 목표 등이 구체적인가
- Measurable : 달성여부를 측정가능한가
- Achievable : 목표가 달성 가능한가
- Relevant : 적절한 공약인가
- Timed : 시간계획은 재대로인가

**선거부정감시단 추가모집 안내**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하니 뜻있는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지원자격** :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외자**

- 만60세이상 고령자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9세 미만)
- 정당·당원인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임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 포함)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의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 기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

☐ **모집인원** : 0명

☐ **신청방법**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단속상황실(포천시청 본관 지하)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지원서(비지 서식), 반명함판 사진 1매(지원서 첨부용), 이력서(서식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07. 11. 14. 까지

☐ **선정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최종선정)

☐ **활동기간 및 내용** :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위촉 후부터 2007. 12. 19. 까지 활동

☐ **생활주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캠페인등 계도·홍보활동 참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35-2243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